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곽규택 · 조승환 · 박지원
김용태 · 유상범 · 신성범
김상훈 · 강대식 · 배준영
강승규 · 조지연 · 강명구
서천호 · 최은석 · 서범수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(校舍), 교지(校地), 수익용기본재산 및 일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시설·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.

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, 교육환경 개선, 인구유입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,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창출, 고용 증대, 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.

그런데 대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·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4조 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. 다만,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구감소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 할 수 있다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